

# 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42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8. 13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,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등 임차료 관련사항이 삭제되어 동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##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로 개정
- 농지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삭제

## 개정근거

- 농지법 개정(법률 제5,948호 '99. 3. 31)
  - 제25조(임차료의 상한) 삭제

# 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” 를 “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중 “제2호”를 삭제하고, 동조제7호중 “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”를 “기타 농지관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”을 “농지관리에 관한 학식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”을 삭제하며, 동조제4항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
제8조중 “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”을 “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별표2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, 첨부1, 2 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						
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			
③주 소	거창군 읍(면)	리	번지(전화번호: )			
④학 력						
⑤주요경력						
영 농 현 황	⑥영농 경력	년 월 ~ 년 월( 년 월)				
	⑦경작 현황	구 분	계(m <sup>2</sup> )	답	전	과수원
		계				
		소유농지				
		임차농지				
⑧주소 득원						
<p>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( )읍(면) ( )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이장(○○개발위원장) 주 소 성 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거창군수 귀하</p>						



현행	개정안
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<u>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, 행정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</u></p> <p>제8조(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) <u>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</u></p> <p><u>제11조(임차료의 상한)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	<p>③ ----- ----- <u>위원 추천</u> ----- -----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&lt;이하 삭제&gt;</u></p> <p>제8조(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) <u>영 제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